

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제한,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를 등기 송달하고자 하였으나, 주소 불명 및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8. 14.

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



- 1. 건 명: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
- 2. 근 거: 고용보험법 제61조, 제6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, 제15조 제3항
- 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송달 불능 사유
정○윤	78.04.26.	1. 충남 아산시 배방읍 북수로25번길 **, 101동 ***호	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(의견제출)	■ 처분제목: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■ 처분원인: (주)태건이엔*에서 2026년 2월 9,11,12,13일, 총 4일간 근로내역 미신고 ■ 반환명령액: 1,636,890원	1. 주소 불명 2. 연락두절

4. 공고기간: 2026. 8. 14.~2026. 8. 28.(15일간)

※ 공시송달의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.

5. 불복사항 고지방법: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6. 기타 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 손나영 수사관(Tel. 041-620-742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